

부산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2나4056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---

### 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2나40567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12. 16 선고 2020가단321261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9. 14.

판결선고 2022. 11. 9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0가단321261 판결

#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. 16. 접수 제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2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. 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정일예, 판사 서호원, 판사 이은명

별지